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5년 8월 11일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5. 7. 31

나. 제출자 : 달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95. 7. 31

라. 상정 및 의결

○ 제3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 95. 8. 9

·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 95. 8. 9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복지행정의 강화를 위한 시범 보건 복지사무소 신설로 일부 기능이 쇠퇴한 가정복지과를 사회과로 통·폐합하고 업무를 일부 조정 신설하여 능률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과 신설 (안 제6조)

· 사회과 + 가정복지과 = 사회과

○ 업무조정

· 자연보호(총무과 ⇨ 청소과)

· 인위재난의 예방·수습(민방위과 신설)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백창기)

본 조례개정은 민선자치구 초대 구청장의 역점사업인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달서구민에게 보건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타 시·도·구에 앞선 행정으로 보다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업무성질상 연관성이 있는 가정복지과를 사회과에 통·폐합하고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개과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코자하는 조례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행정기구중 가정복지과를 사회과로 통합하면 가정복지업무의 기능이 쇠퇴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행정기구중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중앙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5개 시·군·구에 95. 7. 1부터 97. 6. 30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업무와 사회과의 생활보호대상업무가 보건소복지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감소에 따른 기구통합이며 기능쇠퇴는 아닌 것으로 사료 됨.
- ▶ 자연보호업무가 성질상 총무과에서 청소과로 이관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자연보호업무는 강·산·들의 쓰레기제거 등으로 청소업무와 유사하므로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청소과로 이관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됨.
- ▶ 인위재난을 민방위과로 이관할 필요성과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요망
- ▷ 인위재난은 후진국형 인재추방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맡았으나 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라 민방위과 재해총괄계를 만들어 일원화코자 하는 것이며, 인위재난 업무내용은 대형공사 등 사고에 대비 재난예방과 수습을 효과적으로 처리 하고자 하는 것.
- ▶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과로 한다는데 기구 명칭상 가정복지과가 사회과로 흡수된다는 생각이 있으므로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면 어떨지?
- ▷ 행정기구설치는 시·도지사가 표준기구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의 기구는 시의 표준기구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는 시의 표준기구설치규칙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로 명칭변경이 어렵다고 사료되며, 향후 시의 표준기구설치규칙변경시 적극 검토 하겠음을 알려 드림.
- ▶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시 사회과로되면 몇개 계가 되며 업무분장은 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요망?
- ▷ 정부에서는 공무원조직의 축소방침아래 조직정비지침에 대과, 대계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통합될 경우 현재 사회과의 계는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인데 의료보장계와 사회계를 통합하여 사회계로 하고, 노정계는 노사지원계로 명칭변경되어 그대로 두며,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계가 사회과로 이관 되어 4개계가 됩니다.

▶ 총무과 업무를 청소과로 조정하는데 환경보호과로 업무를 이관하면 어떠한지 이에 대한 견해는?

▷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는 대기 및 수질오염 등 주로 법정업무를 처리하며 자연보호업무는 국민계몽적 성격임.

따라서 자연보호업무는 환경보호과보다 청소과로 이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자연보호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자연보호는 국민계몽운동의 성격을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존운동 등 상당한 비중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업무 이관시 직원을 감축하지 않고 이관될 업무와 같이 전보 조정토록 하였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전원찬성)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총무국) 제2항중 “자연보호”를 삭제하고, 제7항중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 다음에 “인위 재난의 예방·수습”을 신설한다.

제6조(사회산업국)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하며, 제7항중 “화장실 개량 및 화장실 정화시설 검사” 다음에 “자연보호”를 신설한다.

①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를 둔다.

② 사회과는 구민복지시책과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생활보호대상자 제외),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촉진 훈련, 여성단체 지도육성, 부녀·아동복지 법인 및 부녀·아동 후생시설에 관한 사항, 묘지, 매·화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무, 청소년 건전지도육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총무국) ①(생략)</p> <p>② 총무과는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관리, 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 선거 및 국민투표, 출장소 및 동행정 지도감독, 주민등록 및 인감, 새마을운동, <u>자연보호</u>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p> <p>③~⑥(생략)</p> <p>⑦ 민방위과는 민방위 계획수립 및 실시, 민방위계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비상대책 업무, 병무 및 향토예비군,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신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p>	<p>제5조(총무국) ①(현행과 같음)</p> <p>②</p> <p>.....<삭제>.....</p> <p>③~⑥(현행과 같음)</p> <p>⑦</p> <p>.....인위재난의 예방·수습.....</p>			
<p>제6조(사회산업국) ① <u>사회산업국에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를 둔다.</u></p> <p>② <u>사회과는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생활보호 및 구호,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보도,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심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u></p>	<p>제6조(사회산업국) ① <u>사회산업국에 사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를 둔다.</u></p> <p>② <u>사회과는 구민복지시책과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생활보호대상자 제외),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촉진훈련, 여성단체 지도육성, 부녀·아동복지법인 및 부녀·아동 후생시설에 관한 사항, 묘지, 매· 화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무, 청소년 건전지도육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u></p>			
<p>③(생략)</p> <p>④ <u>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여성단체 지도육성, 부녀·아동복지 법인 및 부녀·아동후생시설에 관한 사항, 매· 화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무,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u></p> <p>⑤~⑥(생략)</p> <p>⑦ <u>청소과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오물처리허가 및 지도단속, 분뇨·쓰레기수거, 화장실 개량 및 화장실 정화시설검사<신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u></p>	<p>③(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⑤~⑥(현행과 같음)</p> <p>⑦</p> <p>.....자연보호.....</p>			